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, 시·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(안 제2조)
- 나.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,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(안 제3조)